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징수 비용 지급, 권한 위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
-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으로, “시·도지사에게는”을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특별자치시”를 각각 “특별자치시, 특례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지급 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 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u>시·도지사</u> 에게는 징수 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레 시”라 한다)의 장</u> ----- ---- <u>시·도지사 또는 특레시</u> <u>의 장</u> 에게는 ----- -----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u>시·도지사</u> 에게 지급한다. 다만, <u>특별자치도지사</u> 에게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 ----- ----- ----- -- <u>시·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u> ----- ----- -----.
③ <u>시·도지사</u> 는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	③ <u>시·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은</u> ----- -----

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
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
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1. ~ 5. (생략)

②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
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
입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

----- 시·도지사 또는 특
례시의 장-----
-----.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

-----.

④ -----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비고

1. -----
--- 특별자치시, 특별시, ----

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u>특별자치시</u>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 ----- ----- -----. 2. ---- <u>특별자치시, 특별시</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688